

• 전국도서관대회 제3주제발표

대학도서관의 제문제

-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을 중심으로 -

손 정 표

(경북대 도서관학과 교수)

I. 서 언

모든 교육적 진보란 그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질적으로 훌륭한 도서관이 없이는 질적으로 높은 교육이란 불가능하며, 질적으로 우수한 교수진도 확보할 수 없다고 한 버크(Paul Buck)의 주장처럼 대학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대학도서관의 질적향상이 선행되어야 함은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의 대학교육이란 고도의 지적문화의 계승·전달과 창조·발전 및 국가사회의 지도자 양성이라는 전통적인 목적 이외에 산학협동체제의 강화를 통한 현실사회의 개조라는 새로운 목적까지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미시적 정보의 요구도의 증가에 대한 대처와 도서관자료를 통한 교수·학습, 연구·조사간의 보다 밀착된 상호유기적인 관계의 정립을 위한 봉사구조체제 강화의 필요성이 보다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관계법규를 보면 도서관의 3대요소인 시설·자료·인적구성 중 후자는 물론 시설·자료면도 비록 1983년 이전의 기준에 비하여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향상되었다 하더라도 대학교육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하겠다.

따라서 이 논고는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들의 숙원이었던 도서관법 개정안이 사서직의 권익옹호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으나 지난 10월 국회의 통과를 봄에 따라 동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대학도서관 관계 법규의 개정안 마련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도서관법 제6조 2항에서 위임된 시설 및 자료기준, 동법 제7조 1항의 사서직원 기준, 동법 제8조 2항의 폐기 및 제적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관계 법령인 도서관법시행령, 대학설치기준령, 전문대학설치기준령등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대회 주제발표 제목인 도서관법시행령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관계법령까지 살

퍼 보고자한 것은 우리분야만이 아니라 타분야의 경우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체로 관계법령이 있을 경우는 거기에 명문화되어 있어 현행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대통령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사서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규정과 그 밖에 관계법령에 명시하기 어려운 사항만이 도서관법시행령에 명문화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II. 직원기준

1987년에 개정 공포된 도서관법시행령 제6조 1항 3호에 명시된 대학 및 전문대학도서관 직원배치기준을 보면, 「...학생수가 500인 이하인 때에는 2인 이상의 사서직원을 두며, 그 학생수가 500인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하는 800인마다 1인의 사서직원을 증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한 직원배치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수만에 의한 기준설정이라는 점이다.

물론 봉사대상자수가 많다는 것은 그 만큼 많은 적극적 및 잠재적인 독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만큼 다양한 요구도와 이용도를 나타내므로 장서규모, 예산규모, 직원규모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겠다. 그러나 직원규모란 단순히 학생수에 의하여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젤펀드(M.A. Gelfand), 라일(Guy R. Lyle) 등의 주장과 버지니아대학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바우몰과 마르쿠스(W.J. Baumol and M. Marcus), 카펜터(R.L. Carpenter) 등의 각요소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같이 교수수, 장서량과 연차증가량, 물리적시설, 분관유무 등과 같은 여러가지 요소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는다 하겠다.

둘째, 사서직원수에 대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운스와 휴스만(R.B. Downs and J.W. Heussman), 치코렐(M. Chicorel) 등은 양적기준 설정에 대하여 “행정당국자나 조정당국이 최소의 기준을 최대의 기준처럼 고려하게 됨으로써 도서관의 성장을 저해할 요인이 될 우려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성은 국립대학도서관직원의 현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미 필자가 한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국립대학도서관과 같은 경우는 법정직원수만으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985년 1월 현재 사서직원수의 58.8%에 해당하는 임시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업무란 전문적인 업무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서관협회가 전문직업무와 비전문직업무의 내용구성비율을 60%:40%, 영국도서관협회가 65%:35%, 일본도서관협회가 66%:34%를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비전문직업무도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전문직자에 대한 기준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우려성 때문에 필자가 몇편의 논문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도서관법에도 제7조 1항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

를 두어야 하며…」라 하고, 동2항에 「…사서직원은 1급정사서, 2급정사서 및 준사서로 구분 하여…」라 되어 있어 과연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하겠다.

이러한 사례는 구도서관법 제6조에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하고, 동법 제26조에 「…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두어야 한다」하여 조문간의 모순이 있어 오히려 유권해석을 내리기가 보다 용이한 때이었으면서도 모법의 규정때문에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이를 바로 잡지 못한 점을 보더라도 그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세제, 사서직원수가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자격 구분에 의한 배치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필자가 한 논문에서 외국의 대학도서관 현황 및 기준을 비교하여 밝힌 바와같이 우리나라 기준은 외국의 기준들에 비하여 현격히 낮게 책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예:석사학위 이상 소지 전문사서 1인당 학생수가 미국의 종합대학의 경우는 240명, 단과대학 기준은 약 500~600명, 캐나다 300명, 영국은 교수 20명당 전문사서 1명, 일본의 국립대학은 직원1인당 109명<임시직원포함>, 사립대학 206명<임시직원포함>), 도서관법시행령에 제시된 사서직원수는 준사서까지를 포함한 기준인 반면, 구미계통의 기준들에 나타난 사서직원수는 대체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의미하고 있음을 볼 때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전문직자로 확대해석하여 보더라도 그 차이란 더욱 현저할 것이다. 그리고 정사서와 준사서를 구분하여 그 구성비율을 밝혀 놓지 않음으로써 극단적으로는 준사서만으로도 법적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법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표 - 1〉 기준안 비교

	기 준 안	10개 단과대교수 700명, 대학원생 2천명, 학부생 2만명, 장서 30만 권, 연차증가 2만5천권의 경우 직원수 비교
한국도서관 협회안 (1981)	단대별 주계전문가1명, 봉사대상자 1,000명, 장서수 50,000책, 연증가량 5,000책까지 사서 10명과 사무직 5명, 초과시는 봉사대상자 1,000명, 장서 20,000책, 연증가량 2,500책당 사서 각 1명, 전문사서 증원수의 반수상당 사무직 증원	주계전문가 10명 사서직원 53명 } 63명 사무직 27명 계 90명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안(1984)	학생수 1,000명, 장서수 50,000책 기준으로 사서직원 최저 10명, 학생수 1,000명, 장서 20,000책, 연증가량 5,000책마다 각 1명씩 증원	사서직원 47명
필 자 안 (1986)	전직원수는 학부생 1,000명, 대학원생 200명, 교수 50명, 연증가량 3,500책, 장서 22,000책당 각 1명으로 하고, 정사서 : 준사서 : 비자격증 소지자의 구성비율은 40% : 25% : 35%	정사서 26명 준사서 16명 } 42명 비자격증소지자 23명 계 65명

그러면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볼 때 최저 직원규모와 자격 구분별 구성비율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직원수 기준안을 먼저 살펴 보면 <표1>과 같다.

이중 필자의 안은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 있는 기본요소들을 기저로 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에 의해 수립한 버지니아 대학자문위원회 소위원회의 공식을 우리나라실정을 고려하여 수정제시한 것으로, 버지니아 공식을 기저로 한 것은 그 공식으로 유도해 낸 직원수와 실제직원수간의 상관관계수가 종합대학이 0.9996, 단과대학이 0.95로 나타나 꼭 신뢰할 만한 공식이 아닌가 여겨졌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격구분별 구성비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보면, 전문직자 대 비 전문직자의 구성비율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1:2(G.H. Davison과 A.L. Mcneal, 미국의 종합대학 평균)와 2:3(영국과 버지니아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인쇄카드제라든지 도서관업무의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외국도서관의 취급률도 높을 뿐 아니라, 번우열씨의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같이 비전문직자의 전문직 업무 수행비율이 55%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최소한 2:3(40%:60%)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사료되며, 이러한 구성비율은 공공도서관의 경우도 동일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자격구분별구성비율의 경우는 개정법에서 정사서를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도서관법개정안 작업에 참여하였던 도서관계 대표들이 상기한 전문직자, 즉 구미계통의 전문사서에 대한 개념을 어느 계층으로 보아 자격구분을 하였는가, 1급정사서를 주제전문사서로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가, 그 수나 비율에 있어서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였는가(미국의 경우 2년제대학기준은 전문사서1인당 학생수가 500~1,000명인 반면, 종합대학의 실태는 평균 240명, 단과대학은 500~600명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그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된다 하겠다. 망일 단순히 정사서 이상을 전문직자로 생각하였다면 필자가 한 논문에서 휠러와 골드허(J.L. Wheeler and H.Goldhor)의 부서별 전문직자 대 비전문직자수를 기초로 산출하여 제시한 바와 같이 정사서:준사서:비자격증소지자를 40%:25%:35%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하겠으나, 이 경우는 정사서 내에서 1급과 2급의 비율을 1:2(혹은 2:3)으로 할 것인가, 협회의 기준안처럼 단과대학별로 1인으로 할 것인가, 만일 후자로 할 경우 학과구성이 종합대학처럼 다양성을 띠고 있는 단과대학이라든지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없겠는가 등이 역시 문제로 남게된다 하겠다. 반면에 1급정사서를 전문직자로 보았다면 1급정사서:2급정사서:준사서 및 비자격증소지자가 40%:25%:35%(혹은 준사서:비자격증소지자 14%:21%)로 되겠으나, 이 경우는 1급정사서의 자격과 처우에 관한 기준 여하에 따라 현실적으로 부딪칠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하겠다. 즉 1급정사서의 자격 기준을 단순히 도서관학 또는 2급정사서로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만으로 국한하는 경우와 여기에 2급정사서로서 몇 년 이상 도서관 실무경력을 가진자까지 포함시키는 경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1987)안처럼 도서관학 또는 2급정사서로서 박사학위소지자(정보처리 기술사 포함), 혹은 2급정사서로서 석사학위소지자로 6년이상 도서관실무경력을 가진자로 하여 교수나 의사가 되는 것보다

어렵고 연구직공무원의 자격기준보다 더 높게 설정해 놓은 경우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격 기준을 고려하여 볼 때의 구성비를 뿐 아니라, 처우적인 면에서의 실현가능성 여부도 사전에 충분히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특히 국·공립도서관의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처우방안으로 「현행 사서직의 상위직급 부여제, 교수직대우제, 일반직공무원중 연구직공무원제,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연구관, 연구사제와 유사한 방법의 도입 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이 강구될 수 있으나, 이들중 어느 하나를 채택할 경우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하여도 모법의 개정과정에서는 물론, 자격기준설정 및 구성비율 결정과정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물든 도서관봉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1급정사서제를 도입한 것은 꼭 고무적이라 하겠으나, 이를 구분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그 자격기준에 합당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1급정사서란 하나의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자격구분이 되거나 오히려 우리들의 자격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결과밖에 초래되지 않을 것이다.

III. 자료기준

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에서 대학 및 전문대학 설치기준령에 위임된 사항으로, 먼저 1983년에 개정공포된 대학설치기준령 제12조 3호에 명시된 자료기준을 보면 「학생 정원1인당 30권 또는 학과당 5,000권중 많은 수 이상의 도서과 매년의 학생정원 1인당3권 이상을 추가한다」고 규정하고, 동4호에 「학과별로 10종이상(자연계 15종이상)의 전문분야 정기간행물」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84년에 개정공포된 전문대학 설치령 제9조 2항에 명시된 자료기준을 보면 「도서는 학과당 500권 이상으로 하되 학생정원이 80인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1인마다 5권씩을 더한다」고 규정하고, 동3항에 「학과마다 학술잡지 2종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상기한 자료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4년제 대학의 경우 정기간행물 기준과 전문대학의 경우 기본장서량 및 정기간행물 기준이 낮게 책정되어 있고, 전문대학 기준에는 연차증가량 기준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4년제 대학의 경우는 필자가 한 논문에서 밝힌 바와같이 8개국 19개 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본 결과 기본장서량의 경우는 20~30권을 최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연차증가량도 2권정도를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적 기준이란 대체로 최저기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교적 진취적인 기준제시라 하겠으나, 전문대학의 경우는 학생1인당으로 환산하여 볼 때 기본장서량이 5.6권 정도로 나타나 1인당 20권 내외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의 기준들에 비하여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미국 20권, 대만 15권, 일본 20~25권), 질적 구성을 위한 가치지표의 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연차증가량에 대한 기준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2년제 대학이라 하더라도 4년제과정과 개설교과목의 다양성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교수방법과 교과내용이 많고, 교수들의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로 필요

하기 때문에 장서개발단계중 최저집서단계 수준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기간행물의 경우도 외국의 기준들이 4년제 대학의 경우 2,000~3,000종을, 전문대학의 경우 1학과당 20~25종 내외를 최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비하여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대학도서관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연구적 기능이라도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정기간행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법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자료구입 예산에 대한 기준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인적자원과 더불어 충분한 예산적 뒷받침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의 질적봉사를 기대하기 위하여는 유능한 사서의 확보와 더불어 충분한 자료구입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대학 및 전문대학 설치 기준령을 보면 이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대신 국립대학은 매년초에 시달되는 국고에 대한 세출예산각목명세서와 기성회 운영관리지침에 근거하여(1984년도 예산책정기준을 보면 국고는 학과수×45권×6,000원, 학생수×0.5권×6,000원, 기성회비 학생1인당 10,000원 이상으로 되어있음), 사립대학은 1981년도에 문교부가 내놓은 「대학도서관 운영개선 방안」에 제시된 권장비율에 근거하여 대학 경상비의 3%이상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전문대는 자료 미입수로 제외함)

그런데 상기한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4년제 대학도서관의 현실태를 살펴 보면, 필자가 한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85년 현재 국립종합대학의 1개교당 평균 자료구입비는 대학총예산액의 1.5%, 단과대학은 1.1%, 사립종합대학은 1.1%, 단과대학은 1.5%로, 국·공·사립 평균이 1.3%로 나타나 이러한 실정아래서는 연차증가량 및 정기간행물의 법정 기준을 갖추기에 예산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다.(1984년 현재 1개교당 평균 대학 총예산액은 국립종합대가 194억 2천만원, 사립종합대가 200억 3천만원, 국립단과대가 49억 7천만원, 사립단과대가 56억 6천만원임)

그러한 원인은 사립대의 경우는 상기 운영개선 방안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행정적 구속력이 약할 뿐 아니라, 국립대의 경우도 우니나라 예산제도가 품목예산제도이기 때문에 정치적 흥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 예로는 1983년에는 국고가 학생 1인당 7,000원, 기성회비가 1인당 20,000원 이었던 것이 1984년에는 국고가 6,000원, 기성회비가 10,000원으로 하향 조정된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서의 질적 구성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대학 및 전문대학 설치기준령에 자료구입비를 대학총경상비(시설비, 병원경비제외)에 대한 비율로 명문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기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 일 것인가.

먼저 4년제 대학의 정기간행물 기준안을 제시하여 보면, 상기한 외국의 기준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최저기준을 이병목 교수의 권장기준처럼 학생 10명당 2종이상으로 하거나, 국립대학 도서관 협회회의 문교부 건의안처럼 인문계 학과당 30종이상, 사회·자연계 50종이상, 가정·예능계 20종이상, 의치계 200종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협회기준안은 인문계 20종, 사회·자연계 30종, 가정·예·체능계 15종, 의학계 700종, 치·약학계 50종

이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금 낮은 기준제시라 제외함)

다음으로 전문대학의 기준안을 제시하여 보면, 미국 도서관협회와 버튼(R.E. Burton)의 봉사부담량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3·4학년이 1·2학년보다 2배의 봉사부담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로 미루어 볼 때 기본수준단계의 유지를 위하여는 학생정원 1인당 15권이상, 연간증가 책수는 학생정원 1인당 1권이상, 정기간행물은 학과당 10종이상(자연계 15종이상)을 최소한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자료구입 예산의 경우는 4년제대학의 경우 외국의 기준을 보면 학교 총경상비의 1.5~2%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외국자료의 구성비율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환율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히 사립대의 경우는 학교 운영비의 등록금 의존도가 종합대 77.95%(국립대는 56.22%), 단과대 73.44%(국립대는 26.09%)에 달하고 있어 외국의 기준에 비해 높게 책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 총경상비(시설비, 병원경비 제외)에 대한 자료구입비의 비율안을 제시하여 보면, 연간증가량 3권이상과 전술한 정기간행물 기준인인 학생1인당 0.2종이상을 갖출 경우의 비율은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평균증가를 고려하여 산출하여 본 결과 최소한 4% 이상을 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반면에 전문대학의 경우는 학교운영비의 등록금 의존도가 4년제대학에 비하여 5.3%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교수-학습용 자료에 중점을 두어 장서구성을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국내자료에 대한 의존도도 4년제 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앞서 기준 안으로 제시한 연간증가책수 학생1인당 1권이상, 학과당 정기간행물 10종이상(자연계 15종이상)을 갖출 경우의 비율은 최소한 학교총경상비의 1.5~2%이상을 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V. 폐기기준

자료의 참신성의 유지와 학생 및 교수들의 도서관자료에 대한 신뢰도의 증진, 자료이용에 있어서의 노력과 시간 절약 및 효율적인 사고관리등을 위하여는 이용빈도가 낮은 자료, 불필요한 복본, 파·오손도서들을 보존서고에 별치시키거나 폐기시켜야 한다 함은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의 현황을 보면, 자료에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재인(A.K. Jain), 퍼슬러(Fussler)와 사이몬(Simon) 등의 연구결과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수서이래 연 6%, 출판이래 연4.5%씩 평균이용율이 떨어져 대체로 10년이 경과하면 그 이용율이 40%수준으로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공립도서관의 경우는 물품관리법 제2조에 의해 도서가 비품으로 취급되어 왔고, 사립의 경우도 자료제적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불용자료처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당면과제의 하나로 되어 왔다. 것처럼 난제로 여겨 왔던 자료제적의 문제가 급변에 개정된 도서관법 제8조 1항에 「...이용가치가 상실 또는 오손된 자료를 폐기 혹은 제적할 수 있다」하고 동2항에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문화해 놓음으로써 그 해결을 보게 되었다.

상기와 같이 대통령령에 위임된 자료폐기기준에 대하여 제적대상범위와 비율로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적대상범위를 살펴 보면, 이는 자료의 특성, 관종형태, 그 도서관의 서고관리방침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견해를 들어 보면 대체로 「별무이용도서, 신판이 나온 구판도서, 여러책으로 된 저작물로서 불완전한 질, 결호가 많은 색인되지 않은 정기간행물, 불필요한 복본, 파손 및 오손도서, 분실·미반납등 사고도서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이란 자료의 참신성 유지와 효율적인 공간관리를 우선순위로 하여 성장률만큼 폐기(대체로 5%)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공도서관이나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료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하는 학교도서관과는 달리 연구적 기능수행을 위한 장서관리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제적대상범위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견해로는 일반적인 견해처럼 별무이용도서나 신판이 나온 구판도서라 하여 모두를 제적대상범위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몰스(P.M Mores)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100여년만에 갑자기 이용도가 높아진 경우도 있는가 하면, 신·구판의 비교 연구, 역사적 연구를 위해 구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종합대학의 경우는 주제에 따라 망라적 수준의 장서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축소하여 신판이 나온 구판의 복본, 완질을 갖춘 저작물의 낙질, 불필요한 복본, 결호가 많은 색인되지 않은 정기간행물, 파손 및 오손도서, 분실도서 및 장기간의 미반납도서로 회수불능도서 등 사고도서로 국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폐기율에 대한 기준안을 제시하여 보면, 필자가 한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체로 국내서의 평균 복본수는 약 3책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장서의 약60%를 차지하고 있는 양서와 일서의 경우는 복본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전체 장서에 대한 실제 복본량은 1/3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필자가 제시한 대상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폐기율을 산출하여 볼 때 연 2%로 나타나 기본 장서 확보량에 도달된 이후부터는 2%씩 제적시킬 수 있도록 도서관법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국·공립도서관에 적용되어 왔던 물품관리법과 동시행령도 이에 따라 개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V. 시설기준

대학도서관의 시설기준은 도서관법에서 대학 및 전문대학 설치기준령에 위임된 사항으로, 먼저 1983년에 개정 공포된 대학설치기준령 제12조 1·2호에 명시된 기준을 보면 「1. 열람실·정기간행물실·참고도서열람실·서고 및 사무실등 필요한 시설, 2. 열람실에는 학생정원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이라 규정하고 있고, 1984년에 개정 공포된 전문대학설치기준령 제9조 1항에 명시된 기준을 보면 「학생정원의 1할이상 수용할 수 있는 열람실 외에 정기간행물실·서고·사무실」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중 각 실의 배치문제는 열람실제도에 따라서 분리 또는 통합될 수 있기 때문에(주제별

열람실제도와 같은 경우) 제외하고 여기서는 열람석수와 면적에 대한 기준만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먼저 열람석수에 대한 기준을 살펴 보면 외국의 기준(10~33%)에 비하여 낮지 않은 기준이지만 한 조사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주택)을 학습장소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대학들은 등록학생수의 1/3이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50%에 보다 가까와지려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결코 높은 기준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가정학습환경을 고려하여 볼 때 4년제 대학은 적어도 이병목교수가 바람직한 기준으로 제시한 등록학생수의 2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문대학의 경우는 시설적인 면에서의 자율학습 분위기 조성에 대한 요구도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등록 학생수의 20% 수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열람석 면적에 관한 기준을 살펴 보면 현행 설치기준령에는 이에 대한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열람석이란 직원, 장서량과 더불어 도서관 시설규모 결정의 3대 기본요소이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설치령에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열람석 면적에 대한 외국의 기준들이나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2.3㎡가 일반적인 견해라 하겠으나, 한국인의 표준체위를 고려하여 볼 때 학생(전문대 포함) 1좌석당 면적은 로드웁스(Lodwycks)나 이병목교수의 주장처럼 최소한 2㎡로 하고, 대학원생 및 교수의 경우는 2~3권 이상의 도서를 동시에 펴 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학생보다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피어스(W.S. Pierce)의 주장처럼 2.8㎡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책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

**세우자 도서관
기르자 나라힘**